



산업체위탁교육 규정

제정일	1997.12. 4
개정일	2009. 2.13
개정차수	3차
담당부서	입학홍보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와 학칙 제54조에 의하여 동 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산업체 범위

제 2조 (산업체의 범위)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단체

제 3 장 교육형태 및 학사관리

제 3조 (위탁형태) 위탁교육의 기본형태는 산업체의 인적 구성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독 위탁과 연합위탁 2가지로 한다.

1. 단독위탁 :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학부(전공) 또는 학과별로 위탁
2. 연합위탁 : 둘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학부(전공) 또는 학과별로 위탁

제 4조 (학생수 및 학급편성) ① 모집단위별 학생수는 교육부의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 지침에 따른다.

② 학급편성은 20명 이상의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야간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 미만이라도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 5조 (설치학과) 설치학과는 본교에 기 설치된 기존학과에 의한다.

제 6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본교와 위탁산업체가 협의하여 새로이 개발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교육과정 변경 시 정규과정의 교과목(전공교과)과 최소한 1/2 이상 동일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 7조 (학사관리) ① 본교 학칙에 준한다.

② 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없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산업체장의 요구에 따라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③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산업체위탁교육은 현재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매학기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교과목 이수) 교과목 이수는 학칙에 준한다.

제 9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위탁교육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1/2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09. 2.1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설학과에 관한 사항
2. 위탁 의뢰 산업체 적부에 관한 건
3. 위탁생의 선발기준
4.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5. 위탁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학교와 산업체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선발기준 및 등록금 납부

제10조 (자격 및 선발기준) ① 위탁생의 자격은 교육부의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위탁생은 당해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11조 (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①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본교 등록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비는 본교 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산업체별 위탁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산업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12조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① 위탁교육 산업체와 본교의 산학협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
 2.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4.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②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내의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실이 제공되는 경우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의 학급으로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본교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13조 (위탁교육 지원서류)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의뢰서 1부 (본교 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 (위탁교육계약서) 위탁교육을 의뢰한 산업체와 본교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 (위탁교육의 실시 승인신청) 위탁교육의 실시 승인 신청은 교육부의 전문대학산업체 위탁교육 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시행세칙)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본교의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